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칠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982

발의연월일: 2022. 6. 15.

발 의 자: 권칠승·김의겸·김정호

김철민 · 김태년 · 김회재

도종환 • 박광온 • 소병훈

이용우 · 이원택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술 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 등에 대한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내용은 상 법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지식재산권으로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특례를 두고 있지 않아 등록한 저작권이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에도 이를 이용한 현물출자가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 등을 위하여 산업재산권과 유사한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에 대해서도 현물출자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6조, 제11조의3 등).

법률 제 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중 "산업재산권"을 "지식재산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디자인권"을 "디자인권·저작권"으로,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3제2항 본문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제11조의5제2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전용실시권을"을 "전용의 실시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산업재산권등"을 "지식재산권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u>산업재산권</u> 등의 출자 특례)	제6조(<u>지식재산권</u> 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①
대상에는 특허권·실용신안권· <u>디</u>	
<u>자인권</u>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u>디자인권·저작권</u>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	
(이하 " <u>산업재산권등</u> "이라 한	<u>지식재산권등</u>
다)를 포함한다.	<u></u>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	②
평가기관이 <u>산업재산권등</u> 의 가	<u>지식재산권등</u>
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	
용은 「상법」 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	
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제11조의3(전문회사의 운영 등)
① (생 략)	① (현행과 같음)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	2
회사를 설립할 때나 그 전문회	
사가 신주(新株)를 발행할 때에	
<u>산업재산권등</u> 의 현물이나 현금	- <u>지식재산권등</u>
을 출자할 수 있다. 다만, 제11	
조의2제1항제1호의 대학이 현	
금만을 출자하여 전문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전문회사에	

보유기술을 이전하여야 한다.

- ③ (생략)
-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생 략)
 - ②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제11 조의3제2항에 따라 현물을 전 문회사에 출자할 경우 산업재 산권등에 대한 가격의 평가와 감정은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 ③ (생 략)
 - ④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전문회사에 대하여 산업재산권등의이용을 허락할 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다.
-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벤처기업이었던 기업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벤처기업이었던 당시 이루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 1. 제6조에 따른 산업재산권등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5(전문회사 등에 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u>지식재산</u>
<u>권등</u>
③ (현행과 같음)
4
<u>지식재산권등</u>
<u>전용의 실시 또는 사</u>
용에 관한 권리를
<u>.</u>
제24조(벤처기업이었던 기업에
대한 주식발행 등의 특례) ①
1 <u>지식재산권등</u> -

의 출자 행위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